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1. 관련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나. 「공직자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계 등 금지)

2. 오는 4.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필요한 언행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흐트려 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직자의 선거 중립 및 선거 관여 금지

- **정치적 중립의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나. 주요 위반사례

- **업무수행 중 선거관계 행위** : 집배업무 수행 중 호별 방문 시 특정후보(정당) 지지발언은 법 위반임(공직선거법 제106조)
- **사적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의 개최나 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도 법 위반임
- **선거관계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됨(10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거소투표 관련 불법선거 개입** : 공무원이 거소투표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거소투표자를 대신하여 투표
- **SNS를 통해 글 게시** : SNS를 통해 특정후보 지지 또는 비방의 글 게시 또는 전파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임
- **선거운동을 위해 우체국사(별정국 포함) 이용**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 배부·게시도 금지됨. 끝.

전북지방우정청장



수신자 우정청 각 과·실장, 전 관서장, 우정노조전북지방본부위원장, 공무원노조전북지역본부장

★주무관

최문정

운영지원과장

유기권

사업지원국장

장재혁

청장

03/25

김병수

협조자

감사관

이제봉

예금영업과장

최용록

우정사업국장

박찬례

시행 운영지원과-1558

(2016.03.25.) 접수

()

☎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효자동2가) / <http://jeonbuk.koreapost.go.kr>

전화 [\(063\)240-3529](tel:0632403529) / 전송 (063)240-3519 / sanso@koreapost.go.kr / 공개